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77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송재봉 · 김문수 · 정혜경
박정현 · 이연희 · 김기표
이수진 · 임미애 · 민병덕
김우영 · 황명선 · 이용선
이광희 · 박지혜 · 최혁진
남인순 의원(16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K-뷰티 열풍을 바탕으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산업 육성·수출 확대·디지털 전환·지속가능성 대응 등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과 인디 브랜드가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이 커서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한편,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브랜드 추격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화장품산업이 현재의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이에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총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진흥·기술개발·수출확대·ESG 경영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K-뷰티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화장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술개발, 시장 조사·연구, 해외마케팅, 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화장품산업의 구조·인력·기술수준·수출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 진흥정책을 조정·협의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7조).

- 다. 정부는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화장품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
해 연구·개발 사업 지원, 임상·데이터 기반 연구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융합 등 기술개발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국가는 친환경 연료, 탄소저감 등 화장품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국가의 화장품 관련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통합 인증·시험·표준 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제출자료의 상호인정 및 인증 효율화를 지
원하기 위한 공공 인증지원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
12조).
- 아.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국제공동연구, 기술표준화, 해외거점센터 구
축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
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며, 브랜드의 상표권·디자인 도용 등 지
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4조).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및 수출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
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개발,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장품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8조).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화장품의 연구·개발, 제조, 품질관리, 유통, 인증, 수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등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혁신형 화장품기업”이란 화장품의 기술개발, 수출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명경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은 화장품기업(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 유통 또는 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으로서 제1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3. “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명경영”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으로서 환경오염·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노동자보호·산업안전보건·소비자보호·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지며 주주·이사회·회계·거래 등 기업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영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의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화장품의 기술 연구·개발, 시장 조사·연구, 해외마케팅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환경·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을 말한다)의 개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원 및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품산업 진흥 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산업의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3. 화장품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
4. 화장품산업의 다변화 및 글로벌 진출 전략
5. 디지털·데이터 기반 화장품산업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화장품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화장품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소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화장품산

업의 구조, 인력, 기술수준, 수출입 등 화장품산업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통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실태조사 실시의 주기·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 및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산업의 구조개선 및 혁신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산업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연계 교육·훈련·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직무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및 디지털 혁신 지원)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임상·데이터 기반 연구,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화장품산업의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 및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의 기술 및 브랜드 개발, 인증, 마케팅 및 수출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속가능성 대응 및 친환경 인프라 조성) ① 국가는 친환경 원료, 포장재, 탄소저감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통합 인증·시험·표준관리체계의 구축) 정부는 해외국가의 화장품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 인증·시험·표준관리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 인증지원 플랫폼의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제출자료의 상호인정 및 인증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 인증지원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인·허가 절차의 효율화) 정부는 화장품의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전자심사(e-Submission)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협력 및 전자상거래 지원) ①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기술표준화, 해외거점센터 구축 등 화장품산업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유통, 결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 디자인, 포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요 수출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공동대응·분쟁조정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화장품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및 수출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클러스터의 지정기준,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산학연관 협력 및 공동인프라 조성) ① 국가는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 시험·인증·임상·품질관리 등 공동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중소·인디 브랜드, OEM·ODM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해외거점센터 및 홍보관 설치 등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개발, 수출, 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명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장품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세제, 금융, 연구·개발, 판로개척, 수출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명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촉진) ① 국가는 화장품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명경영 촉진을 위하여 친환경 포장, 탄소저감, 윤리적 생산, 공급망 투명성 및 인권경영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명경영 확산을 위한 평가기

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